◉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6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7호, 2012. 3. 12.)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8부터 제77조의11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말한다.
2. “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4. “비교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시험능력을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조의9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

6. “시험분야”라 함은 영 제77조의8의 구분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적합성평가 시험분야를 말한다.
7. “시험종목”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 1에 따라 시험분야별 세부 기술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시험종목을 말한다.
8. “표본검사”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을 선정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또는 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 및 관련 국제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험분야) ① 시험기관이 지정 신청하는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체결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서 유예 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신규 인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종목으로 향후 시험설비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2. 적합성평가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요가 적고, 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종목으로 신청인이 시험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종목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한 확인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정요건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2.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3. 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 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험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8. 시험종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시험기관의 심사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2. 제8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에 대한 심사방법과 절차 등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원장은 전문심사기구의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
3. 지정일
4. 지정번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6자리의 식별부호를 부여하되 앞의 2자리는 “KR″로 표시하고 뒤의 4자리는 지정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지정시험기관의 변경 등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정서 원본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대표주소
3. 대표자
4. 시험장주소
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
7. 품질관리규정 및 시험수수료

④ 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3항제6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변경내용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설비의 변경은 설비의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전부폐지한 때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시험기관의 양수·합병 승인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

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①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에 출입하여 영 제77조의10제1항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성 및 이행 여부
3. 시험환경 및 시험시설의 적합성 유지 여부
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7일전까지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검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원장은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지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내용 등을 관보에 공고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3조(시험성적서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대형, 정밀기자재로서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하고 주변기자재 구성 등 시험기관에 반입하여 시험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신청 기자재명
2.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4.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
5. 시험신청기자재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모델번호, 기자재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9. 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시험원의 의견
10. 시험업무 수행 중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하게 된 경우 보완 전후의 모습, 부위, 재질, 사유, 보완 전의 부적합 사항 등의 보완내용
11. 지정시험기관의 장, 시험책임자 및 담당시험원의 직위 및 서명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측정설비의 관리) ①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설비는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적합측정설비는 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하는 주요 측정설비에 대하여 점검기

록부를 작성하여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과 시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및 시험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관리규정)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ISO/IEC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적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규정을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지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시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유효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보관)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해 신청자가 시험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며 열람, 복사, 반출 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표본검사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전파법 제5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11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반기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표본검사 비율은 제1항에 의한 대상기자재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표본검사 비율을 적용한 결과 1건 미만인 경우에는 1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 시험시 회로 및 구조를 보완 또는 변경한 기자재
2. 국민의 인체안전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자재
3. 공중통신망에 전파 혼신·간섭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자재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자재 등

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선정된 표본에 대하여 회로 및 구조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평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표본검사 결과 회로 및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표본검사용 표본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구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비교숙련도 시험)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험기관 또는 시험원이 수행한 시험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교숙련도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기술협의체의 운영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하여 기술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정시험기관 심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지정시험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개정됨으로 인해 시험종목이 추가되거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처리기간 등) ① 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일, 교정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 원장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과 ISO/IEC 17011(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일반요건)에 따른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ISO/IEC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시험분야	시험종목에 관한 사항
유선	「단말장치기술기준」,「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사항
무선	「무선설비규칙」,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간이무선국용·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사항에서 정한 사항
전자파적합성	「전자파장해 방지기준」및「전자파 보호기준」에서 정한 사항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 기자재」에서 정한 사항

[별표 2]

교정검사를 받아야하는 전자파적합측정설비

(제14조 관련)

측 정 설 비 명	권고 교정검사주기	비 고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1년	
공중선	2년	
전원 안정화 회로망	1년	
흡수 클램프	1년	
전자기 클램프	1년	
결합·감결합 회로망	1년	
전계 프로브	1년	
자계 프로브	1년	
정전기 발생기	1년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1년	
서지 발생기	1년	
전원전압변동장치	1년	

[별표 3]

수 수 료

(제24조 관련)

1. 전자파적합측정설비 교정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수수료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88,000
시험장평가용 공중선	기본	113,000
	1파장 추가시마다	36,000
루프공중선		147,000
광대역공중선		160,000
전원안정화회로망		96,000
흡수클램프		155,000
전자기 클램프		155,000
결합.감결합 회로망		96,000
전계 프로브		211,000
자계 프로브		178,000
정전기 발생기		96,000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116,000
서지 발생기		116,000
전원전압변동장치		96,000

2.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가. 무선분야(구 형식검정)

(단위 : 원)

<table>
<tr><th colspan="3">대 상 기 기</th><th>수수료</th></tr>
<tr><td colspan="3">경보자동수신기</td><td>677,500</td></tr>
<tr><td colspan="3">구명정용휴대무선전신기자재</td><td>407,300</td></tr>
<tr><td colspan="3">선박국용무선방위측정기</td><td>349,100</td></tr>
<tr><td colspan="3">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td><td>375,400</td></tr>
<tr><td colspan="3">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td><td>446,700</td></tr>
<tr><td rowspan="5">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설비의 기자재</td><td colspan="2">송·수신장치</td><td>437,300</td></tr>
<tr><td colspan="2">송신장치</td><td>298,400</td></tr>
<tr><td colspan="2">수신장치</td><td>255,200</td></tr>
<tr><td colspan="2">경보자동전화장치내장 송수신장치</td><td>480,500</td></tr>
<tr><td colspan="2">경보자동전화장치내장 송신장치</td><td>337,800</td></tr>
<tr><td colspan="3">선박국용 양방향 무선전화장치</td><td>442,900</td></tr>
<tr><td colspan="3">경보자동전화장치</td><td>214,000</td></tr>
<tr><td colspan="3">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자재</td><td>647,500</td></tr>
<tr><td colspan="3">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자재</td><td>626,900</td></tr>
<tr><td colspan="3">레이다 및 자동레이다 푸롯팅장치</td><td>786,400</td></tr>
<tr><td rowspan="6">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용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자재</td><td rowspan="3">MF·HF대</td><td>송·수신장치</td><td>793,900</td></tr>
<tr><td>송신장치</td><td>688,800</td></tr>
<tr><td>수신장치</td><td>688,800</td></tr>
<tr><td rowspan="3">VHF대</td><td>송·수신장치</td><td>711,300</td></tr>
<tr><td>송신장치</td><td>647,500</td></tr>
<tr><td>수신장치</td><td>668,100</td></tr>
<tr><td colspan="3">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td><td>668,800</td></tr>
<tr><td colspan="3">네비텍스 수신기</td><td>668,100</td></tr>
<tr><td colspan="3">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자재</td><td>619,300</td></tr>
<tr><td colspan="3">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자재</td><td>688,800</td></tr>
<tr><td colspan="3">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자재</td><td>711,300</td></tr>
</table>

※ 비 고

1. 레이다와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프롯팅장치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레이다프롯팅장치의 무선 시험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2.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다기능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무선분야(구 형식등록)

(단위 : 원)

대 상 기 기		수수료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송수신장치	437,300
	송신장치	302,200
	수신장치	251,500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자재		289,000
라디오부이의 기자재		619,300
의료용 고주파이용설비의 기자재		135,100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설비의 기자재	송·수신장치	437,300
	송신장치	298,400
	수신장치	255,200
F1D, G1D, F2D, G2D,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	송·수신장치	319,100
	송신장치	305,900
	수신장치	249,600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313,400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900MHz대 무선데이타 통신용 무선설비		302,200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313,400
영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미약전계강도 무선기자재 및 무선조정용 무선기자재		90,100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HF대 기자재	437,300
	VHF/UHF대 기자재 등	319,10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비 고

1.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와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에 대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 4,095,000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다기능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전자파적합성분야

(단위 : 원)

시 험 종 목	수수료
방사성장해시험	298,400
전도성장해시험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373,000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149,200
전기적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149,200
서지 내성시험	149,200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149,200
전원주파수자기장 내성시험	149,200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시험	149,200
펄스자기장	149,200
감쇄진동자기장	149,200

라. 유선분야

1) 전송망기자재류

(단위 : 원)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주전송장치	473,900
구내전송증폭기	468,000
분기자재	427,000
분배기	380,100
동축케이블	263,900
직렬단자	263,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CATV 기자재류)	263,900

2) 단말장치류

(단위 : 원)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전화기	432,800
다기능전화기	432,800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자재	432,800
코드없는 전화기(유선분야)	432,800
코드없는 전화기(무선분야)	396,500
팩시밀리기자재	432,800
영상전화기	432,800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자재	432,800
공중전화기	432,800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432,800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	263,900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	432,800
팩시밀리 전용 모뎀카드	432,800
근거리 데이타채널 모뎀	263,900
무선모뎀	432,800
신용카드조회 단말기자재	432,800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자재	432,800
PC에 장착된 방송통신 단말기자재	432,800
영상전송기	432,800
다기능 보조기	432,800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자재	432,800
비상통보기자재	432,800
원격검침용통신기자재	176,000
원격제어기자재	432,800
통신설비 유지보수용 톤신호 송수신 시험기자재	432,800
회선장애 감시기자재	432,800
ISDN망종단기자재	432,800
ISDN단말기자재	432,800
ISDN다기능기자재	432,800
접속커넥터	70,400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자재	432,800
IPTV	432,800
기타(분류되지 않는 단말기자재류)	263,900

3) 시스템류

(단위 : 원)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전화교환기	456,300
데이타교환기	456,300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456,300
구내교환기	456,300
키폰시스템	456,300
키폰과 구내교환기의 혼합시스템	456,300
자동음성처리시스템	456,300
전자사서함시스템	456,300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456,300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263,900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263,900
응답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456,300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263,900
기타(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263,900

4) 회선종단장치류

(단위 : 원)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전화교환기	456,300
데이타교환기	456,300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456,300
구내교환기	456,300
키폰시스템	456,300
키폰과 구내교환기의 혼합시스템	456,300
자동음성처리시스템	456,300
전자사서함시템	456,300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456,300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263,900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263,900
응답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456,300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263,900
기타(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263,900

[별지 제1호서식]

지 정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시험분야	[ ] 유선 [ ] 무선 [ ] 전자파적합성 [ ]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시 험 장	주 소	규격 [ ]야외 [ ]대용 [ ] 기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수수료 영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서류심사/현장심사	➔	지정여부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지 정 서

Certificate of Designation

지정번호*(Designation No.)* : *KR*

기관명*(Name of CAB)* :

주소*(Address)* :

시험분야*(Scope of Designation)* :

시험종목*(Items of Tests)* : 별지 참조

위 기관을 「전파법」 제58조의5의 규정 및 ISO/IEC17025:2005에 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This Laboratory is accredited and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adio Waves Act an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5:2005.

. . .

국 립 전 파 연 구 원 장 직인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변 경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 60일(현장심사의 경우)

신 청 인	기관명(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1. 추 가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시험분야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전자파흡수율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전자파흡수율
□ 시험종목		

2. 변 경

□ 기관명		
□ 기관대표주소		
□ 대표자		
□ 시험장주소		
□ 시험설비		
□ 시험환경조건		
□ 품질책임자		
□ 기술책임자		
□ 시험원		
□ 품질관리규정		
□ 시험수수료		

3. 중지/폐지

구 분	분야/종목	사유	중지기간/폐지일자
□ 중지 □ 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필요시)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4.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필요시) 5. 지정서 원본(필요시)	수수료 영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서류심사/현장심사	➔	변경지정여부결정	➔	지정서 발급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양수승인신청서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양수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양도·양수 내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서류심사/현장심사	➔	승인여부결정	➔	지정서 발급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합병승인신청서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합병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피합병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합 병 내 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서류심사/현장심사	➔	승인여부결정	➔	지정서 발급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시험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25일 ☐ 55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 (기기명)		모델명 (형식명)	
	기기부호 (형식부호)		용 도	
제조자	상호(명칭)		제조국	
	주 소			

신청분야	[ ] 유선 [ ] 무선 [ ] 전자파적합성 [ ] 전자파흡수율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용자설명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될 것) 2. 외관도(제품 전체 외관도) 3.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함. 단,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수수료 제23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직접/온라인)	➔	서류검토/신청기자재확인	➔	시험	➔	시험성적서 발급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서식]

표본검사 결과 보고

□ 표본검사 현황

표본 기간	
표본 비율	
시험 실적	

□ 표본검사 결과

상호명	기기명	모델명	시험분야	적/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시험기관명(대표자)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